

제352회 정례회
2016. 11. 24.(목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이양섭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6년 10월 31일

○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02일

3. 제정이유

-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 발굴, 조사연구, 자치역량 강화, 민간교류·협력 및 국가정책대응 등을 촉진하기 위한 협의회 및 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협의회 설치·운영 (안 제5,6,7조)
 - 기능 : 정책과제 발굴, 대정부 핵심과제 대응, 주민참여 활성화 등
 - 구성 : 30명 이내, 공동 위원장(도지사, 민간위원 1명), 임기 2년
- 나.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·운영 (안 제13, 14조)
 - 기능 : 정책개발, 조사연구, 자치역량 강화, 민간협력, 국가 정책 대응 등
- 다. 센터의 운영 위탁 (안 제14조)
 -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, 운영 (위탁기간 3년)
- 라. 센터 운영 위원회 설치 (안 제16조)
 - 운영자 구성 원칙, 20명 이내, 임기 3년
- 마. 센터 운영에 대한 감독 (안 제18조)
 -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 실시, 필요시 수시 검사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안 제출 배경

-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통한 분권 축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이자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.
 - 수도권정비계획법(1983. 7. 1. 시행)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(2004. 4. 1. 시행) 제정 등을 통해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음.
 - ※ 경제·교육·인구 등 발전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수준 : 국토 면적의 12%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%, 100대 기업 본사의 95%, 전국 20대 대학의 80%, 의료기관 51%, 정부투자기관 89%, 예금 70% 밀집
- 그러나, 법령개정 및 수 차례의 수도권 투자활성화, 경제활성화 대책 발표 등을 통해 정부의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가 진행되고 있고, 지방분권 또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0:20으로 자주 재원의 부족과 사무(특히 복지정책)의 중앙 예측으로 인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바, 이에 대응한 도 차원의 지속가능한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.
- 본 제정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민·관이 함께 노력해 타개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협의회” 및 관련 센터 설치·운영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 검토

- 안 제4조에서는 도의 책무로서,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·추진 및 이에 반하는 국가 정책에 대한 대응노력을 규정 하였고,

- 안 제5조에서는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운동을 도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·관 협의체인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함)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, 구성,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음.
 - 기능
 1.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추진
 2. 대정부 핵심과제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및 추진
 3.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행방안 마련
 4. 그 밖에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
 - 구성 : 위원장(2명) 포함 30명 이내 위원, 임기 2년
- 안 제11조에서는 실질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다른 지역의 협의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음.
- 안 제13조에서는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체로서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함)의 설치·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음.
 - 센터는 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, (안 제14조)
 - 센터 운영의 감독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(안 제18조)

다. 종합 의견

- 지방분권 또한, 1991년 지방자치단체가 도입된 이후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과 관련한 부분적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중앙 예속 심화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미흡함.
- 이에,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고, 중앙에 집중된

권한 이양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민·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관련 상위법령 등에 대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협의회와 센터의 운영에 있어 본 조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